

[별표 1]

사회취약계층 감면표(제2조, 제20조 관련)

사회취약계층	구비서류	감면율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	수급자증명서	80%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* *‘생계급여’이외 급여의 중복수급 포함	수급자증명서 (생계급여 일반수급자)	90%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전 1급~3급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3급)	장애인증명서(주민센터),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(국가보훈처)	80%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전 1급~3급) 중 장애인연금수령자	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	90%
만 70세이상 고령자	없음	90%
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	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	70%
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프로그램 참여자	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확인서(고용센터)	70%
사망자	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(등)초본	70%
실종자	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 실종신고서	70%
국가유공자(상이등급 4~7급)	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(국가보훈처)	70%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중전 4급~6급)	장애인증명서(주민센터)	70%
구속수감자(잔여형기 2년초과)	수용증명서(교도소장 발행)	70%
주민등록말소자(말소기간 3년이상)	말소자 주민등록초본	70%
장기입원자(6개월이상),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	입원확인서,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	70%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한부모가족증명서(주민센터)	70%
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주민센터)	70%
만60세이상 고령자(만70세 미만)	없음	70%
만70세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	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	70%
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	장애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	70%
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사람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	70%
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(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)	재난피해사실확인서(해당 지자체)	70%
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명하는 사람	5·18 민주유공자 확인서(국가보훈처)	70%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명 받은 사람	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(국가보훈처)	70%
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 제6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여성가장인 사람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 일체	70%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	차상위계층 증명서(주민센터)	70%
충채무원금(다중채무자의 경우 원금잔액 합계액) 잔액이 2백만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채무자	없음	90%